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준호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4. 10. 30.(수)

제 목

증권사 임직원들의 직무정보이용 비리 사건 수사결과

- 직무정보이용 사익 추구 및 대출알선 대가 수수 증권사 임직원 8명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득한 사건을 수사하여 A증권사 임직원 7명 및 B증권사 임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 A증권사 임직원은 기업들의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동산 매각 관련 정보를 직무상 지득한 후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기업들로부터 11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 A증권사 다른 임직원들이 금융회사인 A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합계 1,186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 알선 대가로 8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 위 대출 알선 대가 자금 마련과 위와 같이 매수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및 재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을 법인에서 빼내는 과정에서 **합계 38억 5,000만 원 상당의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을 범한 혐의로 기소하였음**
- **(직무정보이용 관련 범행)** 한편, A증권사 임직원들과 B증권사 임직원이 상장사의 CB(전환사채) 발행 관련 주선·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CB를 인수하여 사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 지인인 회계사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증권사 임직원들의 가족 등이 그 법인에 투자하고 그 법인이 위 CB를 인수하여 이익을 취하고, 허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비용을 부풀려 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규명하여 기소하였음

- 높은 공신력과 정보력을 가진 증권사 임직원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질서와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적발하고,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의뢰하였음
- 검찰은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금융질서 교란범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

1 피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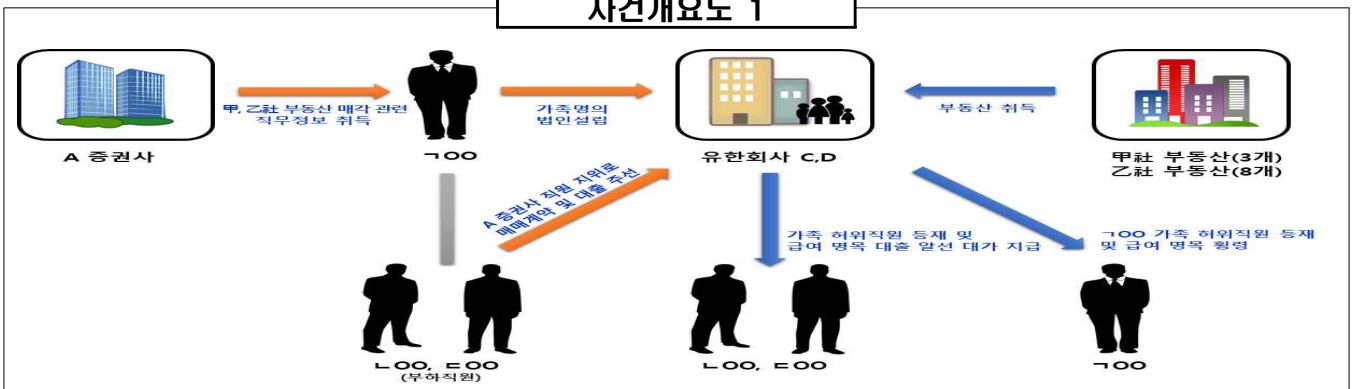
	피고인(나이)	지위	처분
1	ㄱOO(51세)	前 A증권사 IB사업 본부장	'24. 7. 24. 불구속 기소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
2	ㄴOO(51세)	前 A증권사 IB사업 팀장	'24. 2. 27.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24. 7. 24. 불구속 기소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 '24. 10. 30.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3	ㄷOO(43세)	前 A증권사 IB사업 팀원	'24. 2. 27.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24. 7. 24. 불구속 기소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 '24. 10. 30.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4	ㄹOO(46세)	前 A증권사 IB사업 팀장	'24. 2. 27.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24. 10. 30.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5	ㅁOO(42세)	前 A증권사 IB사업 팀원	'24. 2. 27.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24. 10. 30.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6	ㅂOO(43세)	상동	'24. 10. 30.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7	ㅅOO(42세)	상동	'24. 10. 30.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8	ㅇOO(44세)	前 B증권사 IB부서 직원	'24. 10. 30. 불구속 기소 (직무정보이용 등 관련 범행)

※ 피고인들은 '23. 10.경 퇴사

1.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

<p>ㄱOO</p>	<p>'14. 10.~'17. 9. A증권사 직원으로 甲, 乙社의 자금조달을 위한 위 회사들 소유의 11개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부동산 매각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가족 명의로 유한회사 C, D를 설립한 후 위 부동산 매수대금 마련을 위해 위 유한회사 명의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여의치가 않자, 부하직원인 ㄴOO, ㄷOO에게 A증권사의 직원 지위를 이용하여 A증권사가 중개·주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을 5회에 걸쳐 알선하도록 하여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1,186억 원을 대출받고 그 대가로 합계 8억 5,000만 원 제공 【특경법위반(중재등)】 ※ 직무정보이용으로 인해 위 부동산 전매차익, 임대료 수익 등 취득한 이익이 245억원에 달하나, 직무정보이용 범행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기소하지 아니함</p>
<p>ㄴOO ㄷOO</p>	<p>'14. 10.~'17. 9. 위와 같이 대출알선한 대가로 ㄱOO으로부터 ㄴOO은 4억 6,100만 원, ㄷOO은 3억 8,800만 원 수수 【특경법위반(수재등)】</p>
<p>ㄱOO ㄴOO ㄷOO</p>	<p>- '15. 2.~'17. 10. ㄴOO, ㄷOO 가족들을 위 유한회사 C, D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후, 위 대출알선 대가 8억 5,0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위 가족들 명의 계좌로 수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 '14. 12.~'17. 9. A증권사 직원으로서 5차례에 걸쳐 대출을 중개하였음에도 그 중개수수료 약 11억 원을 A증권사에 귀속시키지 아니함 【업무상배임】</p>
<p>ㄱOO</p>	<p>- '15. 1.~'23. 9. 위 유한회사 C, D에 처, 장인, 장모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합계 30억 원 지급 【특경법위반(횡령)】 - '21. 6.경 A증권사 직원으로서 E 주식회사(甲社 명의 변경)로부터 유한회사 C에게 매각된 부동산의 재매수를 의뢰받고 부동산의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CB를 발행하려는 E 주식회사의 CB 발행을 중개·주선하며 CB 발행 정보, 내부심의자료 등을 취득하여 유한회사 C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 산정 등에 이용 【자본시장법위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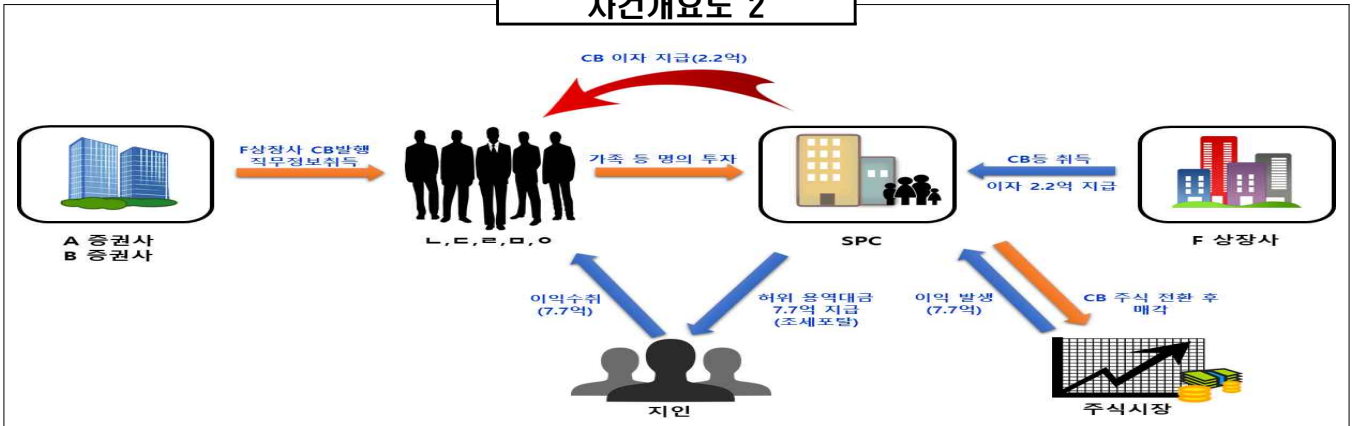
사건개요도 1



2. 직무정보이용 관련 범행

<p>ㄴOO ㄷOO ㄹOO ㅁOO ㅇO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3.경 코스닥 상장사 F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CB 발행 관련 정보 (발행가액, 콜옵션, 담보제공 여부, 이익 취득 가능성)를 지득한 후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가족 등이 위 SPCC에 투자하고, 그 SPCC 명의로 CB 25억 원을 인수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후 그 주식을 처분하여 CB에 대한 이자(2억 2,000만 원) 및 전환차익(7억 7,000만 원) 합계 약 9억 9,000만 원의 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 '20. 4.경 위와 같이 인수한 CB 25억 원 중 12억 5,000만 원 상당의 CB를 전환권 행사 및 매도 과정에서 SPCC 등 타인 명의로 매도 【자본시장법위반】 - '21. 2.경 위 SPCC에 귀속된 위 전환차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족 등 명의로 허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법인세 1억 원 포탈 【조세범처벌법위반】
--	--

사건개요도 2



<p>ㄴOO ㄷOO ㅁOO ㅂOO ㅇOO</p>	<p>'22. 9.경 코스닥 상장사 F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CB 발행 관련 정보 (발행가액, 콜옵션, 담보제공 여부, 이익 취득 가능성 등)를 지득한 후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SPCC를 설립하여 가족 등 명의로 위 SPCC에 투자하고, 그 SPCC 명의로 위 CB 40억 원을 인수하여 CB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3억 9,000만 원의 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p>
<p>ㄴOO ㄷOO</p>	<p>'22. 9.경 코스닥 상장사 F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CB 발행 관련 정보 (발행가액, 콜옵션, 담보제공 여부, 이익 취득 가능성 등)를 지득한 후 6억 원 상당의 위 F사 CB에 대한 콜옵션 매수 【자본시장법위반】</p>
<p>ㄹOO ㅅOO</p>	<p>- '22. 6.경 A증권사가 코스닥 상장사 G의 CB 150억 원을 인수하는 업무를 하면서 CB 발행 관련 정보(발행가액, 콜옵션, 담보제공 여부, 이익 취득 가능성)를 지득하여 A증권사가 인수한 위 CB 150억 원 중 CB 30억 원을 ㄹOO이 지분을 보유한 자산운영사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위 운영사가 사모투자신탁에 편입하도록 하여 운용보수를 취득 【자본시장법위반】</p>

	- '22. 6.경 위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위 CB 30억 원 중 6억 원에 대한 콜옵션을 지인 명의로 취득하여 콜옵션을 행사함으로써 700만 원의 이익 취득 【자본시장법위반】
ㄱOO	- '19. 11.경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 H 명의로 I社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J 의 CB 50억 원에 대해 전매 주선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500만 원 수령 【자본시장법 위반】 - '20. 6.경 A증권사 직원으로서 위 CB 매매각 중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중개수수료를 A증권사에 귀속시키지 아니함 【업무상배임】 - '19. 10.~12. 위 H를 운영하면서 모친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처 및 지인에게 허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위 H 회사 자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 【업무상횡령】

3

수사 경과

- '23. 10.~11. 금융감독원, 수사통보
- '23. 11.~'24. 1. A증권사, 주거지, 금융회사(대출 관련) 등 20여 곳 압수수색
- '24. 2.~5. 피의자 등 관련인 조사
- '24. 2. ㄴOO, ㄷOO, ㄹOO, ㅁOO에 대한 직무정보이용 관련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 임박하여 불구속 기소
- '24. 5.~6. ㄱOO, ㄴOO, ㄷOO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으로 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
※ (기각 사유) 방어권 보장 필요, 주거일정, 증거인멸 염려 없음
- '24. 7. 24. ㄱOO, ㄴOO, ㄷOO 대출알선 등 관련 범행 불구속 기소, 대출알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의뢰
- ~'24. 9. 직무정보이용 관련 범행 피의자 등 관련인 조사
- '24. 10. 24. ㅇOO의 범행 및 ㄱOO 추가 범행 인지
- '24. 10. 30. ㄴOO, ㄷOO, ㄹOO, ㅁOO, ㅂOO, ㄱOO, ㅇOO에 대한 직무정보이용 관련 범행 불구속 기소

●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공성 및 그에 따른 책임

- (관련 규정)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의 뇌물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것과 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됨
-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책임) 위 규정들과 관련 판례들에 비추어 보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일반인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여 그 직무의 공공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공정성과 청렴성,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됨

●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사례 확인

- 국내 공신력 있는 대형 증권사 임직원들이 대출 알선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죄의식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모럴헤저드 사례 확인함
- 특히, 이번 사례에서는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배분하기 위해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횡령·배임을 일삼고, 심지어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부풀려 조세를 포탈하고, 회사 명의로 골프회원권, 고급 수입 차량, 미술품 등을 구매하여 호화생활을 누리는 등 준범죄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

● 직무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이익 취득 유형을 밝혀 범행수법 규명

- (정보의 비대칭성 악용) 부동산 매각 및 대출 업무, CB 발행 주선 업무 등을 통해 지득한 직무정보 중 담보제공 여부, 원금 손실 가능성, 수익율 등을 종합하여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정보를 이용

- (다양한 범행수법) ① 증권사 임직원이 직접 직무정보를 이용하는 유형, ② 증권사 임직원의 가족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하는 유형, ③ 증권사 임직원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하는 유형, ④ 가족 등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여 직무정보를 이용하는 유형, ⑤ 지인인 회계사 명의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증권사 임직원의 가족 등이 투자한 후 직무정보를 이용하는 유형 등 직무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이익 취득 유형을 밝혀내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음

● 증권사들의 내부통제제도 개선책 마련 계기

-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필요성) 본 수사로 인하여 증권사의 내부통제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되었고 재발방지 및 임직원들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
-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A증권사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내부통제제도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내부통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기존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사항을 마련 중임

5 향후 계획

- (범죄수익 박탈) 대출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추징보전 의뢰하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검찰은 향후에도 국민경제와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엄정하게 대응하여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하여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임